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영 제7조제2항”을 “영 제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호 중 “지방산업단지”를 “일반산업단지”로 한다.

제29조제5항제3호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4항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8항”을 각각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영 제30조제2항의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, 건설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
2. 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조사·연구·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

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0 이상”을 “5이상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3항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4항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5조의3(변상금 징수의 특례)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부료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) 제34조 개정규정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6조 및 제34조 시행 후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료, 대부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6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영 제7조제3항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8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·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<u>지방산업단지</u>, <u>농공단지</u> 내의 공유재산</p> <p>3. ~ 6. (생략)</p>	<p>제28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일반산업단지</u>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9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</p>	<p>제29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</p>

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

4. ~ 8. (생략)

⑥ (생략)

제32조(대부료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②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

1. ~ 3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·연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5항-----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대부료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 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34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~ 3. (생략)

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·② (생략) ③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

해당하는 -----

-----.

1.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, 건설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

2. 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조사·연구·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

제34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-----

----- 5 이상 -----

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6항-----

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
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
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
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
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85조의3(변상금 징수의 특례)
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
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.